

# 제76조의8~제76조의22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76조의8~제76조의22의 요약

-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모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2 이상 여러 개인 경우 모두 적용함)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 연결모법인·자법인 등의 사업연도는 일치하여야 하고, 차이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법령 등에 의해 일치할 수 없는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 연결사업연도를 적용함.
-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함.
- 연결모법인간의 적격합병·적격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시 연결납세제도가 계속 적용되도록 의제연결사업연도(합병일 등 전·후 기간을 각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로 연결납세방식 적용함.
-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 연결납세방식의 승인이 취소된 연결법인은 취소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음.
- 연결모법인이 새로운 내국법인을 완전지배하는 경우는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나, 설립등기일부터 완전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따라서 연결자법인의 경영권이 변경되는 연도는 연결 법인세대상에서 제외됨).
  - 연결자법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함.
-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않거나 해산한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 적용배제함.
- 연결법인의 연결사업연도 과세표준
  -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 각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의 합계액 ⊖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일반방법대로 소득 또는 결손금의 계산)
-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수입배당금액 익금산입, 손금부인한 기부금 및 접대비 상당액의 손금 산입)
-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조정(연결법인간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연결법인간의 접대비 및 대손충당금의 손금불산입, 고정자산 등 양도소득의 손금 및 익금불산입)
-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세무조정액을 계산한 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 연결산출세액 = 연결과세표준 × 법인세율

- 연결법인이 비사업용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일반법인의 법인세특례와 같음)를 합산한 금액을 연결산출세액으로 함.
- 연결산출세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을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으로 연결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모법인의 납세지로 하나 산출세액은 각각의 연결법인에 귀속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

○ 연결법인세액의 신고 및 납부

- 연결모법인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연결대차대조표·연결손익계산서, 연결법인간 출자 현황 및 거래명세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단, 회계감사미종결로 결산미확정시 1개월 연장 가능함.
- 연결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내에 납부해야 함(법 제63조 준용).

○ 연결법인세액의 납부·물납과 연결법인간 세액안분지급

- 연결산출세액에서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 연결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결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내 납부해야 함.
- 연결자법인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해당법인의 감면세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 기타·가산세 중소기업 적용

- 연결법인세신고의 결정·경정·징수·환급·가산세 등은 일반규정대로 적용함.
- 연결법인세신고되는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 적용함.

●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①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2010. 12. 30 개정)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이하 제76조의9 및 제76조의10에서 “본래사업연도”라 한다)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완전자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 ④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2010. 12. 30 개정)
- ⑤ 제1조제9호 및 이 장에서 “완전 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2010. 12. 30 개정)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 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경우에는 그 합병일, 분할일 또는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2항, 제76조의11제1항 및 제76조의12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 1.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 간의 합병(제44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합병만 해당한다)
  - 2.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의 분할(제46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분할만 해당한다)

● 제76조의9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1.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결모법인이 완전 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3. 연결모법인의 완전자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5. 연결법인에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연결법인은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10. 12. 30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금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연결법인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76조의18에 따라 납부한 연결중간에납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의 연결법인별 중간에납세액은 제64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같은 항 제2호의 중간에납세액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⑤ 제76조의8제3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그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과 취소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본래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2010. 12. 30 개정)

● 제76조의10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76조의9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의9제2항 중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로 본다. (2010. 12. 30 개정)

③ 제76조의8제3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본래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2010. 12. 30 개정)

### ● 제76조의11 [연결자법인의 추가]

①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③ 연결모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 제76조의12 [연결자법인의 배제]

①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6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6조의11제3항을 준용한다. (2010. 12. 30 개정)

### ● 제76조의13 [과세표준]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례로 뺀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1. 각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연결사업연도(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의 합계액
3.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
  - ② 제1항제1호에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이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이 0보다 적은 경우 해당 금액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과 제76조의1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처분손실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손금은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2010. 12. 30 개정)
    1. 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중 해당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이라 한다)
    2. 연결모법인이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만 해당한다)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 :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연결모법인이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한 분할법인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소멸한 분할법인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 중 연결모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 귀속하는 금액 :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중 소멸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④ 삭 제 (2010. 12. 30)
- ⑤ 제1항에 따른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의 공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 제76조의14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2.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 :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과 다른 연결법

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의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4.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3,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손실은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제76조의13제1항 제1호의 결손금으로 보고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이후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2010. 12. 30 개정)

1.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만 한정한다)을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하여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하되,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설립등기일부터 완전자법인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완전자법인이 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완전자법인이 되기 전 취득한 자산에 한정한다)의 처분손실 : 해당 완전자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귀속액을 말하되,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3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계산과 제2항에 따른 처분손실의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 제76조의15**

**【연결산출세액】**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76조의13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연결법인이 제55조의2의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해당 토지등을 다른 연결법인이 양수하여

제76조의14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55조의2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합산한 금액을 연결산출세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③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을 준용한다. (2010. 12. 30 개정)

④ 연결산출세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 제76조의16 【세액감면 등】

① 연결산출세액에서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의 합계액을 뺀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55조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와 세액 감면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각 연결법인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을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③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세액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 제76조의17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2. 각 연결법인의 제6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3. 연결법인 간 출자 현황 및 거래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 ④ 연결모법인의 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60조제3항·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2010. 12. 30 개정)
- ⑤ 연결모법인은 제1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11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연결자법인의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 제76조의18 [연결중간에납]**

-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확정된 연결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중간에납세액"이라 한다)을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이 없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만료일까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1.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 2.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에납세액으로 하고,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연결법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결중간에납세액과 추가된 연결법인의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에납세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 ③ 연결모법인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제76조의15를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연결중간에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 1.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 2.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연결법인이 중간예납기간이 지나기 전에 원천자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경우 연결모법인은 해당 연결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귀속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빼고 납부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 ⑤ 연결중간에납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63조제6항 및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2010. 12. 30 개정)

● 제76조의19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물납】

①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76조의17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 제76조의18에 따른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에납세액
3. 제73조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

② 연결자법인은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7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감면세액
2.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중간에납세액
3. 제73조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2010. 12. 30 개정)

● 제76조의20 【결정·경정 및 징수 등】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66조(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의2 및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0. 12. 30 개정)

● 제76조의21 【가산세】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제7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제76조의22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 Ⅰ. 연결납세제도 개요와 적용요건 (법 제76조의8)

### 1. 본조의 개관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란 2이상의 내국법인이 모회사와 자회사로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각 소득을 통산하여 계산된 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연결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함)에 대해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적용 사업연도개시일 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모회사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입 첫해(2010년)의 경우 12월말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 2.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범위 (법 제76조의8제1항)

내국법인(연결모법인)과 해당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완전자법인)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완전자법인이 2개 이상인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① 연결모법인의 범위

연결모법인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한

다. 다만, 다음의 법인은 연결모법인에서 제외하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 비영리내국법인
-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 ② 완전자법인의 법인

완전자법인은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으로 완전자법인이 2개 이상인 때에는 해당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법인은 완전자법인에서 제외하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는 법인
-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 ③ 완전지배의 범위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의 100%를 보유하는 경우로 내국법인과 당해 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는 다른 법인이 합하여 제3의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연결모법인이 완전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근로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주식을 포함)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주식을 포함) 등과 같이 내부자가 5%

이내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도 완전지배로 본다.

**관련법령**

❶ 시행령 제120조의1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①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 중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1. 비영리내국법인
2.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3.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4.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법 제76조의8제5항에 따른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2010. 2. 18 개정)
5. 삭제 (2010. 12. 30)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2항의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②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에서 “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법인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④ 법 제76조의8제5항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2010. 12. 7 개정)

1.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2.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근로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3.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2010. 2. 18 개정)

**3. 연결사업연도 (법 제76조의8제2항·제3항)**

연결사업연도는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 회계기간으로 연결대상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신청과 함께 연결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와 사업연도가 다른 연결대상법인은 사업연도의 변경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하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본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완전자법인으로 법령 등에 사업연도가

정해져 변경이 불가능하고 분기·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의견을 받은 경우 연결모법인의 사업연도를 사업연도로 간주한다.

### 관련법령

#### ❶ 시행령 제120조의1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③ 법 제76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 중 제1호에 따른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0. 2. 18 신설)

1.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2. 법령 등에 따라 연결사업연도말에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받을 것

## 4. 연결법인의 납세지 (법 제76조의8제4항)

각 연결법인의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각 연결법인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각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연결모법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함으로써 각 연결법인의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 5. 연결모법인간 적격합병 등의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 적용 (법 제76조의 8 제6항)

#### 1)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간 합병의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간의 합병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자산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적격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피합병법인의 연결자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① 피합병법인의 연결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피합병법인의 연결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는 피합병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방식을 적용한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과 그 연결자법인은 해당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이에 관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피합병법인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며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❶ 시행령 제120조의1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⑤ 법 제76조의8제6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연결자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010. 12. 30 신설)

1.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피합병법인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피합병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피합병법인과 그 연결자법인은 해당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이에 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피합병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합병등기일의 다음날부터 합병법인의 연결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

합병등기일의 다음날부터 합병법인의 연결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에는 합병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며 해당 기간을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새로 설립된 법인이 아닐 경우에는 기존의 연결자법인은 종전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며 피합병법인의 연결자법인은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된 기간을 통산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부터 1개월 내에 연결법인변경신고서(새로 설립된 합병법인인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❶ 시행령 제120조의1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⑤ 법 제76조의8제6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연결자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010. 12. 30 신설)

2. 합병등기일 다음 날부터 합병법인의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합병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새로 설립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의 연결자법인은 종전대로 연

결납세방식을 적용하며, 피합병법인의 연결자법인은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된 기간을 통산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 제2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부터 1개월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변경신고서(새로 설립된 합병법인인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다른 법인(변경연결모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 연결모법인(종전연결모법인)의 연결자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① 종전연결모법인의 연결사업연도개시일부터 교환 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

교환 등을 한 날이 속하는 종전연결모법인의 연결사업연도개시일부터 교환 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에는 종전연결모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연결모법인과 그 연결자법인은 해당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이에 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종전연결모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 ① 시행령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의 법인 등】

⑥ 법 제76조의8제6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이하 이 항에서 “교환등”이라 한다)을 통해 다른 법인(이하 이 항에서 “변경연결모법인”이라 한다)의 완전자법인이 된 연결모법인(이하 이 항에서 “종전연결모법인”이라 한다)의 연결자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010. 12. 30 신설)

1. 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종전연결모법인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교환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 : 종전연결모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종전연결모법인과 그 연결자법인은 해당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이에 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종전연결모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환 등을 한 날의 다음날부터 변경연결모법인의 연결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

교환 등을 한 날의 다음날부터 변경연결모법인의 연결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에는 변경연결모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변경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기존의 연결자법인은 종전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며 종전연결모법인과 그 연결자법인은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된 기간을 통산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변경연결모법인은 교환 등을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연결법인변경신고서(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새로 설립된 변경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120조의1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⑥ 법 제76조의8제6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이하 이 항에서 “교환등”이라 한다)을 통해 다른 법인(이하 이 항에서 “변경연결모법인”이라 한다)의 원전자법인이 된 연결모법인(이하 이 항에서 “종전연결모법인”이라 한다)의 연결자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010. 12. 30 신설)

2. 교환등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변경연결모법인의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 변경연결모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변경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기존의 연결자법인은 종전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며, 종전연결모법인과 그 연결자법인은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된 기간을 통산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3. 제2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변경연결모법인은 교환등을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변경신고서(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새로 설립된 변경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의 분할의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의 분할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적격분할의 경우에 한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완전자법인으로 된 분할법인의 연결자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① 분할법인의 연결사업연도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분할법인의 연결사업연도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에는 분할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이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연결자법인은 종전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며 분할신설법인의 연결자법인으로 되는 분할법인의 연결자법인은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된 기간을 통산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과 그 연결자법인은 해당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이에 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분할법인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 ● 시행령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⑦ 법 제76조의8제6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완전자법인으로 된 분할법인의 연결자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010. 12. 30 신설)

1.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분할법인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 : 분할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연결자법인은 종전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며, 분할신설법인의 연결자법인으로 되는 분할법인의 연결자법인은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된 기간을 통산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3. 제1호의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과 그 연결자법인은 해당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이에 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분할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분할등기일 다음날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연결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

분할등기일 다음날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연결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에는 분할신설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1개월 내에 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120조의1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⑦ 법 제76조의8제6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완전자법인으로 된 분할법인의 연결자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010. 12. 30 신설)

2. 분할등기일 다음 날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 분할신설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1개월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신청**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연결모법인)과 해당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최초의 연결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날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신청을 함에 있어서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에 사업연도가 개시되는 연결대상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

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 관련법령

#### ● 시행령 제120조의13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 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법 제76조의8제1항의 완전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연결대상법인등”이라 한다)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9. 2. 4 신설)
-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는 연결대상법인등은 연결사업연도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와 사업연도가 다른 연결대상법인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의 변경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2009. 2. 4 신설)
- ③ 국세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날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2009. 2. 4 신설)

#### ● 부칙 제31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에 대한 특례】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

- ① 제120조의13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연결대상법인등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을 신청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 II.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및 포기 (법 제76조의 9·제76조의10)

### 1.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의 의의 (법 제76의9제1항)

국세청장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각 연결법인에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연결모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20조의14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① 국세청장이 법 제76조의9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연결모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009. 2. 4 신설)

**2.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1)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사유** (법 제76조의9제1항)

-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연결모법인이 완전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 연결모법인의 완전자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장부 그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에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및 기장의 내용의 원자재 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연결법인에 법인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후 요력**

① 5년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배제함(법 제76조의9제2항)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승인이 취소된 연결법인은 해당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개별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취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② 이월결손금의 승계(법 제76조의9제3항)

각 연결법인의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각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이 취소됨으로써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개별납세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은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으로 본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120조의14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② 법 제76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금액 중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③ 연결중간예납세액의 승계(법 제76조의9제4항)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이 취소됨으로써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개별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결모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시에 법인세법 제76조의 18에 따라 납부한 연결중간예납세액 중 동조 제4항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을 빼고 납부할 수 있다.

**4. 연결납세방식의 포기의 의의 (법 제76조의10제1항)**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이 유리한 점이 없거나 불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과세방식의 잦은 변경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

지하기 위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법인은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 5.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 1) 연결납세방식의 포기신청 (법 제76조의10제1항, 시행령 제120조의15)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사업연도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 포기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세방식의 잦은 변경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하였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법인은 5년 이내에는 개별납세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므로 법인세법 제76조의 9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사유(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완전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도록 함으로써 쉽게 개별납세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 관련법령

#### ● 시행령 제120조의15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

법 제76조의10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때에는 연결모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포기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9. 2. 4 신설)

### 2)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후 요력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한 연결법인은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개별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때의 과세방법은 법인세법 제76조의9제2항 및 제3항의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① 5년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배제(법 제76조의9제2항)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한 연결법인은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개별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당시와 동일한 법인의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② 이월결손금의 승계(법 제76조의9제3항)

각 연결법인의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각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이 배제됨으로써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개별납세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은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으로 본다.

③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승인 취소시 사업연도(법 제76조의 9제5항)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승인이 취소된 경우의 사업연도는 취소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그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과 취소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본래 사업연도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 Ⅲ. 연결자법인의 추가와 배제 (법 제76조의 11·제76조의12)

#### 1. 연결자법인의 추가 (법 제76조의11제1항)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가 성립된 자법인의 경우 별도 신청없이 연결납세방식 적용한다. 또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완전지배하게 되는 등 새로 다른 내국법인



을 지배하게 된 경우 완전자법인은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연결모법인의 물적분할·연결자법인의 인적·물적분할·연결자법인의 합병·연결법인간의 출자 등과 같이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완전지배하는 완전자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 2. 연결자법인의 변경신고 (법 제76조의11제3항)

연결모법인은 새로 내국법인을 지배하게 되거나 설립시부터 완전지배하는 경우 등과 같이 연결자법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연결법인변경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 ● 시행령 제120조의16 【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법 제76조의11제3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의 변경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9. 2. 4 신설)

## 3. 연결자법인의 배제 (법 제76조의12제1항)

경제적 동일성이 상실된 연결자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이거나 연결자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연결자법인의 배제의 요격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개별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때의 과세방법은 법인세법 제76조의9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① 5년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배제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경우의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 적용당시의 동일한 연결모법인과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② 이월결손금의 승계

각 연결법인의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각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개별납세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으로 본다.

③ 연결중간예납세액의 승계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개별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간예납세액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시에 법인세법 제76조의 15에 따라 연결중간예납세액 중 동조 제42항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해당 연결법인의 중간예납세액으로 본다.

**5. 연결자법인의 변경신고** (법 제76조의12제2항)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개별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제3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결법인의 변경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

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IV. 과세표준과 계산 (법 제76조의13·제76조의14)

### 1. 연결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2008. 12. 26 개정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할 수 있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201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법 부칙 1 법률 제9267호).

따라서 연결모법인과 연결모법인이 완전지배하는 완전자법인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2.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법 제76조의13제1항)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연결이월결손금, 각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1)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연결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조정,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 2) 연결이월결손금

##### ① 연결이월결손금의 범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연결이월결손금”이란 각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2009. 1. 1. 전 개시사업

연도발생분은 5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포함)으로서 그 후의 각 연결사업연도(사업연도를 포함)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의 합계액이 0보다 적은 경우의 해당 금액으로서 신고·결정·경정·수정신고된 결손금과 합병거래에서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및 완전자법인이 된 후 자산의 처분손실액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76조의 12 제2항에 따른 연결자법인의 배제 규정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동법시행령 제120조의14제2항에 따른 결손금상당액은 결손금에서 차감한다.

### 관련법령

#### ● 시행령 제120조의17 【과세표준】

- ①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공제한다. (2009. 2. 4 신설)
- ② 법 제76조의12제2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제120조의14제2항에 따른 결손금 상당액은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서 차감한다. (2009. 2. 4 신설)
- ③ 법 제76조의1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 ×	의 소득금액	해당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
		연결집단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의 합계액

#### ②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의 공제제한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결손금은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 i) 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

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중 해당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연결소득개별귀속안분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frac{\text{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text{연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소득의 합계액}} \times \frac{\text{해당 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text{연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소득의 합계액}} = \frac{\text{결손금의 공제한도액}}{\text{공제한도액}}$
--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법인세법 제76조의 14 제1항에 따른 각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조정,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후의 금액으로 한다.
- 해당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 해당 법인의 법인세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으로서 0보다 큰 금액을 말한다.
- 연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소득의 합계액 : 연결집단의 법인세법 제76조의 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0보다 큰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ii) 연결모법인이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연결모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호의 여건을 갖춘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양도받은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에 한정함)의 결손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2009. 1. 1 전 개시사업연도 발생분은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도로 공제한다.

iii) 연결모법인이 분할한 경우의 분할법인의 결손금

연결모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한 분할법인의 자산을 양도받은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소멸한 분할법인의 결손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2009. 1. 1. 전 개시사업연도 발생분은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소멸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도로 공제한다.

iv)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의 배분

법인세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해당결손금의 법인별 배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text{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times \frac{\text{해당 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text{연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소득의 합계액}} = \text{결손금의 공제한도액}$$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120조의17 【과세표준】

④ 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의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9. 2. 4 신설)

$$\text{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times \frac{\text{해당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0보다 작은 경우에 한정한다)}}{\text{각 연결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0보다 작은 경우에 한정한다)의 합계액}}$$

vi) 동일사업연도에 2 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부터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한도로 먼저 공제하고 해당 연결법인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2 이상의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에 비례하여 각각 공제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120조의17 【과세표준】

⑤ 제2항 및 제120조의14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해당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부터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한도로 먼저 공제하고 해당 연결법인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2 이상의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각각 공제된 것으로 본다. (2009. 2. 4 신설)

### 3) 연결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자산의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법 제76조의14제2항)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연결모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및 다른 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 후 발생한 자산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결손금으로 보아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 ① 연결모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에 한정함)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은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을 결손금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 ② 다른 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 후 발생한 자산의 처분손실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설립등기일부터 완전자법인이 된 경우는 제외)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완전자법인이 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의 처분손실은 해당 완전자법인의 연결개별귀속액(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귀속액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을 결손금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 4) 각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의 압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각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의 합계액”이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 5) 각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각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이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3. 연결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법 제76조의14)

연결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연결이월결손금, 각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연결법인별 연결항목을 제거하고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을 조정한 후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을 한 후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 ±	$\left[ \begin{array}{l} \text{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 \\ \text{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조정} \\ \text{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end{array} \right]$	= 결손금의 공제한도액
-----------------------	---	-----------------

###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자세한 내용은 법인세법 제14조에서 설명했다.

### 2)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는 익금불산입액은 익금산입하고 손금불산입액은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은 익금산입하고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기부금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은 손금산입한다는 뜻이다.

### 3)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조정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조정은 수입배당금액, 접대비, 연결법인간채권에 대



한 대손충당금,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연결법인간 수입배당금액의 조정

-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익금불산입

②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 손금불산입

③ 연결법인간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조정

연결법인간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 손금불산입

④ 양도손익이연자산에 대한 양도손익의 조정

i)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범위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조정한다.

양도손익이연자산은 유형고정자산(건축물은 제외), 무형고정자산과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의 채권(채권 등의 경우에는 거래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 및 토지와 건축물로서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라고 다음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20조의18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에서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은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으로서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고정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
2. 제24조제1항제2호의 무형고정자산
3.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의 채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5. 토지와 건축물

ii) 양도손익이연자산에 대한 양도손익의 조정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의 양도손익은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가) 양도시의 조정

- 양도차익 : 익금불산입
- 양도차손 : 손금불산입

(나) 양도 후의 조정

양도손익이연자산에 대한 양도차손익을 전술한 바와 같이 조정한 양도법인은 양수법인에게 시행령 제120조의18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시 조정하여 과세한다.

- 양도손익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text{양도손익} \times \frac{\text{감가상각액}}{\text{양수법인의 장부가액}} = \text{익금 또는 손금불산입액}$$

-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text{양도손익} \times \text{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비율} = \text{익금 또는 손금불산입액}$$

- 양도손익이연자산에 대손이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

$$\text{양도손익} \times \frac{\text{대손금 또는 멸실금액}}{\text{양수법인의 장부가액}} = \text{익금 또는 손금불산입액}$$

- 양도한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text{양도법인의 양도가액} - \text{양도법인의 장부가액} = \text{익금 또는 손금불산입액}$$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120조의18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4 신설)

1. 양도손익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text{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times \frac{\text{감가상각액}}{\text{양수법인의 장부가액}}$$

2.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비율

3. 양도손익이연자산에 대손이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

$$\text{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times \frac{\text{대손금액 또는 멸실금액}}{\text{양수법인의 장부가액}}$$

4. 양도한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양도법인의 양도가액 - 양도법인의 장부가액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산식 대신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2009. 2. 4 신설)

$$\begin{aligned} & \text{양도소득} \\ & \text{또는 양도손실} \times \frac{\text{해당 사업연도의 월수}}{\text{양도손익이연자산의 내용연수 중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의 월수}} \end{aligned}$$

④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항에 따라 양도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날의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09. 2. 4 신설)

⑤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을 다른 연결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을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2009. 2. 4 신설)

⑥ 양도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 승계하고, 양수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2009. 2. 4 신설)

(2009. 2. 4 신설)

⑦ 연결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유가증권과 연결법인 외의 법인으로부터 양수한 같은 종류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양수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 등 양도손익의 이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9. 2. 4 신설)

(2009. 2. 4 신설)

#### 4)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배분하여 각각 익금 또는 손금불산입한다.

**(1)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도 일반법인과 같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에 해당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이 수입배당금액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각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begin{matrix} \text{배분할} \\ \text{익금불산입액} \end{matrix} = \begin{matrix} \text{수입배당금액의} \\ \text{익금불산입액} \end{matrix} \times \frac{\text{해당 연결법인의 출자비율}}{\text{각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의 합계액}}$
--

출자비율은 각 연결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을 가산하여 계산하고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는 각 연결법인의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를 가산하여 계산하되 연결법인간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120조의19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18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수입배당금액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각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의 합계액 중 해당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해당 연결법인에 배분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제2호의 출자비율은 각 연결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을 더하여 계산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는 각 연결법인의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를 더하여 계산하되, 연결법인간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해당 차입거래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뺀 금액으로 한다. (2009. 2. 4 신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7조의3제3항제4호 중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은 각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연결법인 간 거래에 따라 계산된 자산을 제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2009. 2. 4 신설)

**(2) 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시행령 제120조의20)**

연결법인의 경우에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4조를 준용하

여 계산한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법정·특례·지정기부금의 경우**

$$\text{해당 연결법인의 손금불산입액} = \frac{\text{연결집단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text{연결집단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times \frac{\text{해당 연결법인의 기부금지출액}}{\text{각 연결법인의 기부금지출액의 합계액}}$$

② **비지정기부금의 경우**

$$\text{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 \text{해당 연결법인의 손금불산입액}$$

**관련법령**

● **시행령 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4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9. 2. 4 신설)

1.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금 외의 기부금으로서 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2010. 12. 30 개정)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 각각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10. 12. 30 개정)

$$\text{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해당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times \frac{\text{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지출액}}{\text{각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

(3) **연결법인의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시행령 제120조의21)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5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접대비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text{해당 연결법인의 손금불산입액} = \frac{\text{연결집단의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text{연결법인의 접대비지출액의 합계액}} \times \text{해당 연결법인의 접대비지출액}$$

② 신용카드 등 미사용 접대비의 경우

$$\text{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 = \text{해당 연결법인의 손금불산입액}$$

**관련법령**

● 시행령 제120조의21 【연결법인의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5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9. 2. 4 신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times \frac{\text{해당 연결법인의 접대비 지출액}}{\text{각 연결법인의 접대비지출액의 합계액}}$   
 계산한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수입금액은 각 연결법인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서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09. 2. 4 신설)

V. 세액의 계산 (법 제76조의15·제76조의16)

1.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법 제76조의15)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 제76조의13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 제55조의2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합산한 금액을 연결산출세액으로 한다.

### 1)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76조의 13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55조 제1항의 법인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연결산출세액)으로 한다.

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연결산출세액} = \text{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times \text{법인세율}$$

#### ① 법인세율

과세표준	법인세율	
	2009. 1. 1~12. 31 사업연도	2010. 1. 1 이후 사업연도
• 2억원 이하 금액	11%	10%
• 2억원 초과액	22%	22%

#### ② 세율의 적용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은 1년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5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 연결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그 연결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고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그 연결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을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연결산출세액으로 한다.

$$\text{연결산출세액} = \text{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times \frac{12}{\text{연결사업연도의 월수}} \times \frac{\text{연결사업연도의 월수}}{12}$$

※ 연결사업연도의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관련법령**

❶ 시행령 제120조의22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① 법 제76조의1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결법인에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2009. 2. 4 신설)

1. 해당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 법 제76조의13제1항에 따라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된 결손금(해당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한다)과 해당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하 이 장에서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이라 한다)
2. 법 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한 법 제76조의15 제1항의 연결산출세액(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의 비율(이하 이 장에서 “연결세율”이라 한다)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연결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해당 토지 등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양도손익이연자산에 대한 양도손익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동법 제55조의2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합산한 금액을 연결산출세액으로 한다.

$$\text{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text{토지 등의 양도소득} \times \text{세율}$$

① 토지 등의 양도소득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해설을 참조한다.

②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

구 분	세 율	
	등기분	미등기분
• 지가가 급등한 지역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	10%(탄력세율)	”



• 주택의 양도소득	30%(2012년까지 일반세율)	40%(2012년까지 일반세율)
• 비상업용 토지의 양도 소득	30%(2012년까지 일반세율)	40%(2012년까지 일반세율)

## 2.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연결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연결산출세액은 각 연결법인에 귀속시켜야 하므로 연결산출세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은 해당 연결법인의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연결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연결법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text{연결법인별 산출세액} = \text{과세표준개별귀속액} \times \text{연결세율}$$

### ① 과세표준개별귀속액의 계산

해당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연결이월결손금·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때에 2 이상의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소득개별귀속액(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크기에 비례하여 공제한다.

### ② 연결세율

$$\text{연결세율} = \frac{\text{연결산출세액}}{\text{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관련법령

### ① 시행령 제120조의22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② 제1항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계산할 때 2 이상의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소득개별귀속액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크기에 비례하여 공제한다.

(2009. 2. 4 신설)

### 3. 연결세액감면 등 (법 제76조의16)

연결법인이 납부할 연결법인세는 연결산출세액에서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은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감면된 세액으로 한다.

### 4. 연결감면세액의 적용

연결법인이 납부할 연결법인세액은 연결산출세액에서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text{납부할 세액} = \text{연결산출세액} - \text{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의 합계액}$$

#### ①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②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의 계산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법인세법 제55조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③ 감면세액의 적용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 감면세액의 적용순서

- 세액감면(면제를 포함)
-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합병의 경우에 감면세액의 승계

-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합병법인 등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
- 세액공제의 경우로서 이월된 미공제세액의 경우에는 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자산 등에 대한 미공제세액의 범위 안에서 이월 공제 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공제

**관련법령**

● 시행령 제120조의23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① 법 제76조의1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되 그 계산에 관하여는 제96조제1항을 준용한다.

(2009. 2. 4 신설)

② 법 제76조의16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009. 2. 4 신설)

● 시행령 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1.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
2.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 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4. 제5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 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 VI. 연결법인의 신고 및 납부 (법 제76조의17~제76조의19)

### 1. 연결법인의 법인에 과세표준의 신고 (법 제76조의17)

#### ① 연결과세표준의 신고(법 제76조의17제1항)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신고기한의 종료일 이전 2주가 되는 날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이자상당액 부과)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관련법령

##### ● 시행령 제120조의24 【연결세액의 신고】

- ① 법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② 법 제76조의17제1항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연결모법인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신고기한의 종료일 이전 2주가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2. 18 신설)

② **연결과세표준신고서 첨부서류(법 제76조의17제2항·제3항)**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므로 무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된다.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연결소득금액조정명세서
- 각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다음의 서류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각 연결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기타의 부속서류(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현금흐름표)
- 연결법인간 출자현황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2. 연결법인의 중간예납세액** (법 제76조의18)

**1) 연결중간예납세액의 신고와 납부** (법 제76조의18제1항)

각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그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연결중간예납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법 제76조의18제1항·제3항)

연결모법인이 연결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연결중간예납세액의 계산은 직전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한 방법과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한 방법 중 선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① 직전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한 방법

직전연결사업연도에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이 있는 연결모법인은 직전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한 방법 중 선택에 따라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연결중간예납세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직전연결사업연도에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에서 직전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각 연결법인이 납부한 원천납부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한 금액(이하 “연결중간예납세액”이라 함)으로 한다.

$$\text{연결중간예납세액} = \text{직전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 - \left[ \begin{array}{l} \cdot \text{ 직전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 \\ \cdot \text{ 직전연결사업연도의 원천납부세액의 합계액} \end{array} \right] \times \frac{6}{\text{직전사업연도의 월수}}$$

- 직전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 : 직전연결사업연도에 확정된 연결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고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으로 함.
- 직전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 : 직전연결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공제는 제외)으로 함.
- 직전연결사업연도의 원천납부세액 : 직전연결사업연도에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납부세액임.

②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한 방법

직전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한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연결중간예납세액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연결중간예납세액을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연결산출세액에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감면세액·각 연결법인이 납부한 원천납부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text{연결중간예납세액} = \text{연결산출세액} - \begin{matrix} \bullet \text{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감면세액} \\ \bullet \text{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원천납부세액의 합계액} \end{matrix}$
---

※ 연결산출세액은 해당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법 제76조의 1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임.

### 3) 연결납세방식을 처음 적용받는 경우 (법 제76조의18제2항)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경우의 연결중간예납세액은 각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됨으로써 연결법인이 추가된 경우의 연결중간예납세액은 전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결중간예납세액과 추가된 연결법인의 동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4) 연결법인이 완전자법인에서 제외 또는 애산안 경우

(법 제76조의18제4항)

#### ① 직전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한 경우

연결법인이 중간예납기간이 지나기 전에 완전자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연결중간예납세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은 연결중간예납세액에서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하고 납부할 수 있다.

$\text{연결중간예납세액} - \text{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 = \text{납부할 연결중간예납세액}$
---

※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직전연결사업연도에 확정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에서 직전연결사업연도의 해당연결법인의 감면세액·원천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한 금액으로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rray}{l} \text{연결법인별} \\ \text{중간에납세액} \end{array} = \begin{array}{l} \text{직전연결사업} \\ \text{연도의 연결법} \\ \text{인별산출세액} \end{array} - \left[ \begin{array}{l} \bullet \text{ 직전연결사업연도의} \\ \text{감면세액} \\ \bullet \text{ 직전연결사업연도의} \\ \text{원천납부세액} \end{array} \right] \times \frac{6}{\text{직전사업연도의} \\ \text{월수}}$$

**관련법령**

● 시행령 제120조의25 【연결중간에납】

① 법 제76조의18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확정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법 제55조의2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9. 2. 4 신설)

1.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해당 연결법인의 감면된 법인세액
2.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해당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②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한 경우

연결법인이 중간예납기간이 지나기 전에 완전자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연결중간에납세액을 해당중간에납기간의 실적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감면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바 산식 및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text{연결법인별중간에납세액} = \text{연결법인별산출세액} - \left[ \begin{array}{l} \bullet \text{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감면세액} \\ \bullet \text{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원천납부세액} \end{array} \right]$$

**관련법령**

● 시행령 제120조의25 【연결중간에납】

② 연결모법인이 법 제76조의18제3항에 따라 연결중간에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제120조의22에 따라 계산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09. 2. 4 신설)



1.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 연결법인의 감면된 법인세액
2.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 3.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연결중간예납세액

(법 제76조의18제5항)

연결중간예납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63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정할 수 있으나 현재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관련법령

##### ● 법 제63조 【중간예납】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6으로 나눈 금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정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 4. 연결중간예납세액의 분납

연결중간예납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일반법인과 같이 연결모법인이 납부할 연결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일 때 : 1,000만원 초과액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5.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법 제76조의19)

### ① 연결모법인의 납부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해당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연결중간에 납세액·각 연결법인의 원천납부세액의 합계액(가산세는 제외)을 차감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연결법인세로 하여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text{연결법인세액} = \text{연결산출세액} - \left[ \begin{array}{l} \bullet \text{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 \\ \bullet \text{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에납세액} \\ \bullet \text{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별 원천} \end{array} \right]$$

### ② 연결모자법인의 개별귀속세액의 납부

연결자법인은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법인의 감면세액·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연결법인의 원천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begin{array}{l} \text{연결모법인에} \\ \text{지급해야 할} \\ \text{개별귀속세액} \end{array} = \text{연결법인별산출세액} - \left[ \begin{array}{l} \bullet \text{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 \\ \bullet \text{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중} \\ \text{간에납세액} \\ \bullet \text{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원천납부세액} \\ \text{의 합계액} \end{array} \right]$$

## 6. 연결법인세액의 분납 및 물납 (법 제76조의19제3항)

### ① 연결법인의 세액분납

연결모법인이 연결법인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4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

따라서 연결모법인이 납부할 연결법인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때 : 1,000만원 초과액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관련법령**

● **법 제64조 [납 부]**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② **연결법인세액의 물납**

연결모법인이 연결법인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5조를 준용하여 물납을 할 수 있다.

**관련법령**

● **법 제65조 [물 납]**

① 내국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같은 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납부의 대상, 그 채권의 평가 및 납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VII. 결정·경정 및 징수 등** (법 제76조의20~제76조의22)

**1. 결정·경정 및 징수 등** (법 제76조의20)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에 관하

여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추계결정은 제외), 제67조·70조·제71조·제72조의 2 및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조문	준용내용
법인세법 제66조	• 결정 및 경정
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처분
법인세법 제70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법인세법 제71조	• 정수 및 환급
법인세법 제72조의 2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법인세법 제73조	• 원천징수
법인세법 제74조	•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법인세법 제75조	• 소액부정수

## 2. 가산세 (법 제76조의21)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제7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 법인세법상 가산세 요약 ▣

종류	요건	내용
① 무기장 가산세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
②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	• 다음 중 큰 금액 ① 미납금액×0.03%×미납일수 (미납부금액의 10% 한도) ② 미납부금액의 5%
③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④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 미제출·누락·불분명한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 * 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시에는 1% 적용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⑤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소정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제출(불분명)한 금액의 2%</li> <li>*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시에는 1% 적용</li> <li>*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li> </ul>
⑥ 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	계산서 미교부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 불성실 기재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가액의 1%</li> <li>*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li> </ul>
⑦ 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성실 기재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가액의 1%</li> <li>*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시에는 0.5% 적용</li> <li>*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li> </ul>
⑧ 세무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 세무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성실 기재된 경우(면세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가액의 1%</li> <li>* 제출기한 경과 후 16월 이내 제출 시에는 0.5% 적용</li> <li>*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li> </ul>
⑨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실과 다르게 발급 : 해당금액의 2%</li> <li>• 발급내역 미작성·보관 : 해당금액의 0.2%</li> <li>*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li> </ul>
⑩ 신용카드 거래 거부 등 불성실 가산세	신용카드 거래 거부 또는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별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li> <li>*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li> </ul>
⑪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불성실 가산세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가입한 경우 :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0.5%</li> <li>• 발급 거부 등 : 발급거부금액 또는 사실이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li> <li>*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li> </ul>

\* 무신고,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함

\* 결합재무제표 미제출가산세는 2008. 12. 26부터 폐지

### 3.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법 제76조의22)

#### 1)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 ▣

구 분	요 건
업종기준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할 것
규모기준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별표 1]의 규모기준 이내 일 것
독립성 기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간접소유를 포함한다.
졸업기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업원수 : 1,000명 이상</li> <li>• 자기자본 : 1,000억원 이상</li> <li>• 매출액 : 1,000억원 이상</li> <li>• 자산총액 : 5,000억원 이상</li> </ul>

## 2) 중소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중소기업해당 여부는 연결집단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그러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